



2022. 09. 08.

국회입법조사처 | NARS 입법영향분석 | 제56호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허민숙 |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입법영향분석 제56호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허민숙(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2022. 9. 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2. 9. 8.)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요 약

- 국회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을 제정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함
 - 그간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양육 부모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양육비이행법」 제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고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됨
- 「양육비이행법」 제·개정이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양육비이행법」 제정을 통한 무료법률 지원의 확대로 한부모의 소송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 양육비 소송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법률 제정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양육비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법률 제정 이전 1,400여 건에서 연평균 6,831건으로 증가하여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과 양육비 이행 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넷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곤란에 처한 한부모에게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을 제공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섯째,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어 양육비 미지급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일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주요한 한계들이 확인되었음
-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건수 대비 실제 접수건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이행확보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 중 일부만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계가 있음
-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이 18.7%에 불과하여 소송지연, 이행확보 실패 등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음
-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제한된 업무 권한으로 인해 양육비 이행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한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넷째,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의 최종단계인 감치판결에 이르는데 있어 송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회수율이 3.7%에 불과하여, 정부의 양육비 회수 능력과 의지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드러남
- 여섯째,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량강화와 업무쇄신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전담기관의 지역 분원 설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전담해야만 법제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정보를 온라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히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음.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 기일에 법원에서 짧게 첫 대면을 하는 상황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업무수행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재산조사, 추징, 면허정지 등을 할 수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넷째,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 요건으로서의 감치명령 절차를 일괄 삭제하여 양육비 지급 불이행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의 양육비 회수 권한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차 례

□ 요약

I.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 1

| | |
|----------------------|---|
|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 1 |
| 가. 분석대상법률 | 1 |
| 나. 입법배경과 목적 | 1 |
| (1) 입법배경 | 1 |
| (2) 입법목적 | 3 |
| 다. 심의경과 | 4 |
| 라. 주요내용 | 5 |
|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 6 |
| 가. 제도의 개요 | 6 |
| 나. 분석의 필요성 | 7 |
| 다. 자료 및 분석내용 | 8 |

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9

III. 입법영향분석 / 13

| | |
|--------------------------|----|
|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 13 |
| 가. 양육비 이행확보의 지원 | 13 |
| (1)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지원 | 13 |

| | |
|----------------------------------|----|
| (2) 상담 및 접수 | 15 |
| (3)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 16 |
| (4) 양육비 이행 확약 비율 | 17 |
| (5) 양육비 이행률과 이행 지속률 | 18 |
| (6) 양육비 이행 금액 | 22 |
| (7)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 | 22 |
| (가) 추심지원 | 22 |
| (나) 직접지급명령 | 23 |
| (다) 감치명령 신청 | 24 |
| (라)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 25 |
| (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27 |
| (가) 예산 | 27 |
| (나) 신청 및 지원 현황 | 28 |
| (다) 한시적 양육비 구상 현황 | 29 |
|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 32 |
| (1) 운전면허정지 | 32 |
| (2) 출국금지 | 34 |
| (3) 명단공개 | 35 |
| 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관련 의견 조사 | 36 |
| (1)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하지 않은 이유 | 36 |
| (2) 이용 서비스 유형 및 만족도 | 37 |
| (3)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도움 정도 | 39 |
| (4) 추심절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40 |
| (5) 추심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 | 41 |
| (6) 양육비이행관리원 유료 이용에 관한 의견 | 42 |

IV. 결론 / 43

| | |
|---------------------------|----|
| 1.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와 한계 | 43 |
| 가. 성과 | 43 |
| 나. 한계 | 45 |
| 2. 과제 | 48 |

참고문헌 / 52

부록 / 54

표 차례

| | |
|---|----|
| [표 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실적 | 13 |
| [표 2] 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현황 | 14 |
| [표 3]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건수 및 접수건수 | 15 |
| [표 4]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자 현황 | 16 |
| [표 5] 양육비 접수 대비 양육비 이행 확약 비율 | 17 |
| [표 6] 양육비 접수자 중 양육비 이행확약 받은 자 | 17 |
| [표 7]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대비 실이행건수 비율 | 18 |
| [표 8] 양육비 이행의무확정건 대비 실이행건 | 19 |
| [표 9] 양육비 이행 지속률 | 21 |
| [표 10] 양육비 이행 금액 | 22 |
| [표 11] 양육비 추심지원 현황 | 23 |
| [표 1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및 결정 현황 | 23 |
| [표 13]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및 성공건수 현황 | 24 |
| [표 14]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시행 현황 | 25 |
| [표 15]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 | 26 |
| [표 16] 한시적 긴급 양육비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 | 27 |
| [표 1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 29 |
| [표 1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별 구상 현황 | 30 |
| [표 19]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청구 및 회수 현황 | 31 |
| [표 20] 한시적 양육비 청구금액 대비 회수금액 현황 | 32 |
| [표 21]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처분 현황 | 33 |
| [표 22]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현황 | 34 |
| [표 2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처분 현황 | 35 |
| [표 24]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원 및 직접소송 변호사 수 | 46 |
| [표 25]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47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신청자별 양육비 이행확정건 대비 실제 이행건 | 20 |
| [그림 2] 양육비 이행 지속률 | 21 |
| [그림 3]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36 |
| [그림 4]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받은 서비스 유형 | 37 |
| [그림 5]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 37 |
| [그림 6]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유 | 38 |
| [그림 7]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 39 |
| [그림 8]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도움 정도 | 40 |
| [그림 9] 추심절차에 대한 만족도 | 41 |
| [그림 10] 추심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 | 41 |
| [그림 11] 이행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비용을 지불할 의사 | 42 |

I.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 법률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전체 조항이다. 「양육비이행법」은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되었으며,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 총 6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따른 양육비 관련 법적 대응 논의는 이혼율 증가와 함께 대두되었다. 1998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건)은 2.5명으로 전년대비 27.6% 증가하였고, 2003년에 이르러서는 3.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혼율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이다. 특히 이혼 가정의 모(母)가 자녀 양육을 맡게 된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양육 어려움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확보 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¹⁾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01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양육비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²⁾

1) 박복순,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민사법연구』, 12(2), 2004, p.28.

2) 박복순 외,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p.12에서 재인용.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법률 근거의 마련은 협의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2007년의 개정(「민법」 제836조의2)은 협의이혼 시 양육사항(「민법」 제837조3)에 따른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및 방법 등)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9년의 개정을 통해서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제836조의2제5항).

2009년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제63조의3)가 신설되었으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를 명하도록 하였다(제68조).⁴⁾

3)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4) 박복순 외,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처럼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이행결정이 준수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육비 이행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⁵⁾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 개최된 「양육비선지급관련법안공청회」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선지급 제도 도입이 제안되면서, 양육비 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및 공포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가사, 양육,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양육부모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보다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⁶⁾ 이때 별도의 기구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갖춘 전담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정보 접근성, 강제조치 권한 등을 보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어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⁷⁾

(2) 입법목적

「양육비이행법」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2020, p.16.

5)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p.594.

6) 박복순, 「양육비 선지급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의견」, 『양육비선지급관련 법안 공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 p.24.

7) 김승권, 「양육비 제도의 중요성과 쟁점」, 『양육비선지급관련 법안 공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 pp.13-14.

다. 심의경과

제19대 국회인 2012년 6월 22일 김상희의원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2년 7월 2일 우윤근의원은 비혼자 가정의 자녀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시 국가가 우선 지급한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2년 9월 7일 서영교의원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3년 2월 21일 민현주의원은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중 김상희의원안, 우윤근의원안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2.9.19.)에 상정되었다. 상임위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양육비 지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국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지급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 1조 1,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서영교 의원안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12.11.9.)에 상정되었다. 상임위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민법」과 「가사소송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양육비이행기관을 설치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고,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아

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민현주의원안은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3.4.15.)에 상정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상임위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였다.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12.13.)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12.16.),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19.)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제322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2014.2.21.)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다.

제322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4.2.27.)에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14년 2월 28일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률은 2014년 3월 14일 정부에 이송되어, 2014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라. 주요 내용

제정법률인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고(제7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제6조)를 두었고, 양육비 이행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진 양육부모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제14조).

2020년 법률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도입되었고, 2021년 법률개정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이 도입되었다.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양육비이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및 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의 의무를 부과한 입법이다. 그간 사적 영역의 분쟁으로 인식되었던 양육비 이행 사안에 대한 국가 개입을 공식화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미혼모 또는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⁸⁾ 양육비 이행확보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생계가 위태롭지 않도록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

8) 양육비 채무자가 조회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금융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회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고 있다. 무엇보다 단 1회의 신청만으로 종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⁹⁾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그 외 실질적 양육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혼한 부모 뿐 아니라 미혼모와 미혼부도 지원 대상이며,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인 인지청구부터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법정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분석의 필요성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여 종국적으로 아동이 부모의 결혼상태와 관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다.

한부모가족은 맞벌이가 가능한 양부모가족에 비해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그 현황을 엿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54.4%이고, 소득수준이 100~2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34.7%, 200~3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34.2%이다.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한부모가족의 72.2%가 월소득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¹⁰⁾ 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과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 격차는 37%p로 OECD 국가에서 세 번째로 그 격차가 크다.¹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아동 양육비를 확보하는 일은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

9)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최종 검색일: 2022.8.10.),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

10)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p.168.

11) OECD, 「OECD Family Database Co2.2: Child Poverty」 (최종 검색일: 2022.6.25.),

https://www.oecd.org/els/CO_2_2_Child_Poverty.pdf

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은 사적인 채무관계로만 인식되어 오다가 「양육비이행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공공 사안임을 인정받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72.1%에 이르고, 최근 까지 정기 지급을 받았다는 응답율이 15.0%에 불과한 점¹²⁾은 법제정 이후에도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효과, 보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자료 및 분석내용

이 보고서는 「양육비이행법」 제정과 이후의 개정이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라는 입법목적은 달성하였는가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 제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운영이 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에 기여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법률 제정 이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점검하였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관련 경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2021년 한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12)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p.241.

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양육비이행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질의서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양육비이행법」 제·개정에 의한 양육비 이행 관련 효과에 관한 의견, 법률 제정으로 인한 부작용 및 원인, 법률 개정 필요성,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사회적 대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의서는 다음과 같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는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로는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배드파더스를 선정하였다. 2022년 7월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의뢰 기관 모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다.

질문 1(「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 효과)에 대해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에 효과가 있으나, 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는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배드파트너스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으나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질문 2(효과가 있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상담, 협의, 양육비채권 확보 법률지원, 추심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주소, 근무지 조회,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조회, 제재조치 도입 등으로 양육비 지급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이 2015년 21.2%에서 2022년 3월 기준 38.4%로 상승하였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적 책무 확인 및 사회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국가차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업무 지원 필요성을 명시한 것을 큰 성과로 보았다. 또한 지속적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사)양육해결총연합회에서는 ‘효과가 있는 측면과 미약한 측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법률 도입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조치를 통해 지급 이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미지급 재발 방지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개정법을 활용하는 가정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효력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현행 양육비 개정법 신청의 전제조건인 ‘감치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 가정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강제성 낮은 시행규칙’ 문제로 여전히 양육비를 회피하기 쉬우며 실제 양육비 확보의 성과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문제

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양육비 확보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배드파트너스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려면 양육자가 미지급자를 상대로 감치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한 경우 소송 진행이 안되므로 감치판결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질문 3(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제외한 세 기관 모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이행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법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 답변하였다.

질문 4(법률 개정 의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한 “법원을 통한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 조회를 양육비채무자 동의 없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하는 등 법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공시송달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소득 조회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미이행자 제재의 전제 요건인 감치명령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재 조치의 예외 조항, 강제성 낮은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행정절차 정비를 통한 진행대기 시간의 축소, 특히 공시송달특례법 도입으로 감치 소송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배드파트너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행명령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판결 없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의적 송달거부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송달특례법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질문 5(향후 대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이혼시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가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거나 양육비 대지급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 조정 또는 중재 절차로 집행권원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는 현행 「양육비이행법」을 강화하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를 시행하여,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징수하는 것이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위한 향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배드파더스에서는 현행 「양육비이행법」의 부실한 사안을 조속히 개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III.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양육비 이행확보의 지원

(1)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지원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목적은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에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제정 이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3)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이전, 한부모가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은 건수는 2013년 1,403건, 2014년 1,476건이다.

[표 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실적

(단위: 건)

| 구분 | 2013년 | 2014년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133 | 1,238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36 | 29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34 | 209 |
| 합계 | 1,403 | 1,476 |

주: 양육비 청구소송, 인지소송, 이행확보 소송 지원을 말함.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4.).

13)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이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본격화된다. 가장 먼저 관찰되는 것은 소송지원 건수의 증가이다. 2015년 전체 지원건수는 2,5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천 건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도에는 10,788건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양육비 직접소송과 위탁소송¹⁴⁾ 모두를 포함하여 5,528건을 기록하였다. 즉 법률 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부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2015년 15.1%에서 2018년 23.8%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증감을 반복하여 2021년도의 양육비 직접소송 비율은 18.7%에 그치고 있다. 위탁 소송 기관은 감치 소송 지원 신청이 거절되는 등 이행확보 지원 접근성이 더 낮기 때문에¹⁵⁾ 직접소송 비율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표 2] 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직접소송 | | 388 | 917 | 1,186 | 1,532 | 1,820 | 1,323 | 1,031 |
| 위탁 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2,114 | 5,083 | 6,323 | 4,182 | 8,215 | 5,361 | 3,986 |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14 | 689 | 838 | 624 | 623 | 439 | 445 |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48 | 161 | 78 | 106 | 130 | 95 | 66 |
| 합계 | | 2,564 | 6,850 | 8,425 | 6,444 | 10,788 | 7,218 | 5,528 |
| 이행원 직접소송 비율 | | 15.1 | 13.4 | 14.1 | 23.8 | 16.9 | 18.3 | 18.7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14) 직접소송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소송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사건을 다른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함.

15)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2022.6.15.)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2) 상담 및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상담 건수의 변화 추이다. 법률 제정 이후 전담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미혼모 및 한 부모가 양육비 관련 사안을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된 것이다. 2015년도 상담건수는 3만 757건이고,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도에는 3만 3,045건, 2021년도에는 3만 6,151건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상담대비 접수건수의 비중은 크지 않다. 2015년도에는 상담건수 중 5,756건이 이행원에 접수되어 상담건수 대비 접수건수의 비율이 18.7%에 이르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상담건수의 7.2%만이 접수되었다. 다만, 1인이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가 다른 절차에 대해 콜센터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는 있다.

한편, 접수건수 자체만을 살펴볼 때 접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점이 확인된다. 2015년 5,756건에서 2021년 2,607건으로 3천 건 이상 감소하였다. 상담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행확보 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이행관리원의 역량 등과 관련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건수 및 접수건수

(단위 : 건,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상담건수(A) | 30,757 | 28,328 | 25,755 | 32,072 | 28,595 | 33,045 | 36,151 |
| 접수건수(B) | 5,756 | 3,588 | 3,682 | 3,925 | 3,206 | 3,027 | 2,607 |
| 비율(A/B) | 18.7 | 12.7 | 14.3 | 12.2 | 11.2 | 9.2 | 7.2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3)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자 중 접수가 확정된 이용자 중에서 이혼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혼모의 이용률은 2015년 82.1%였다가 2021년에는 79.2%로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이용률이 높은 자는 이혼부로 2015년도 12.3%, 2018년 15.8%를 기록하였고, 2021년도에는 14.8%로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미혼모, 미혼부 순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표 4]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상담자 | 전체 | 30,757 | 28,328 | 25,755 | 32,072 | 28,595 | 33,045 | 36,151 |
| | 이혼부 | 709 (12.3) | 494 (13.8) | 535 (14.5) | 620 (15.8) | 501 (15.6) | 471 (15.6) | 386 (14.8) |
| | 이혼모 | 4,727 (82.1) | 2,858 (79.7) | 2,959 (80.4) | 3,097 (78.9) | 2,537 (79.1) | 2,367 (78.2) | 2,064 (79.2) |
| 접수자 | 미혼부 | 26 (0.5) | 12 (0.3) | 9 (0.2) | 20 (0.5) | 19 (0.6) | 14 (0.5) | 14 (0.5) |
| | 미혼모 | 294 (5.1) | 224 (6.2) | 179 (4.9) | 188 (4.8) | 149 (4.6) | 175 (5.8) | 143 (5.5) |
| | 소계 | 5,756 | 3,588 | 3,682 | 3,925 | 3,206 | 3,027 | 2,607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4) 양육비 이행 확약 비율

2015~2021년의 기간 동안 양육비 이행확보 접수자 중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은 자의 누적 비율은 81.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일 기간 총 2만 5,791명의 접수자 중 2만 1,103명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이행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이처럼 비교적 높은 양육비 이행 확약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촉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양육비 접수 대비 양육비 이행 확약 비율

(단위 : 명,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총합 |
|--------|-------|-------|-------|-------|-------|-------|-------|--------|
| 접수자 | 5,756 | 3,588 | 3,682 | 3,925 | 3,206 | 3,027 | 2,607 | 25,791 |
| 확약받은 자 | 2,427 | 2,831 | 2,783 | 3,494 | 4,538 | 2,428 | 2,602 | 21,103 |
| 비율 | 42.2 | 56.3 | 61.7 | 68.0 | 79.7 | 79.8 | 81.8 | 81.8 |

주: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이 접수된 연도와 확약받은 연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 비율이 아니며 누적건수에 대한 비율로 계산함.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양육비 접수자 중 양육비 이행을 약속받은 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부의 비중이 83.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이혼모는 82.3%, 미혼부 72.8%, 미혼모는 72.2%를 기록하고 있다.

[표 6] 양육비 접수자 중 양육비 이행확약 받은 자

(단위 : 명,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이혼부 | 접수자 | 709 | 494 | 535 | 620 | 501 | 471 |
| | 확약받은자 | 246 | 407 | 393 | 509 | 748 | 396 |
| | 비율 | 34.7 | 54.3 | 60.2 | 65.9 | 80.6 | 81.1 |

| | | | | | | | | |
|-----|-------|-------|-------|-------|-------|-------|-------|-------|
| 이혼모 | 접수자 | 4,727 | 2,858 | 2,959 | 3,097 | 2,537 | 2,367 | 2,064 |
| | 확약받은자 | 2,095 | 2,235 | 2,234 | 2,805 | 3,606 | 1,915 | 2,067 |
| | 비율 | 44.3 | 57.1 | 62.3 | 68.7 | 77.6 | 80.3 | 82.3 |
| 미혼부 | 접수자 | 26 | 12 | 9 | 20 | 19 | 14 | 14 |
| | 확약받은자 | 6 | 15 | 11 | 7 | 23 | 11 | 10 |
| | 비율 | 23.1 | 55.3 | 68.1 | 58.2 | 72.1 | 73.0 | 72.8 |
| 미혼모 | 접수자 | 294 | 224 | 179 | 188 | 149 | 175 | 143 |
| | 확약받은자 | 80 | 174 | 145 | 173 | 161 | 106 | 137 |
| | 비율 | 27.2 | 49.0 | 57.2 | 64.6 | 70.9 | 69.4 | 72.2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5) 양육비 이행률과 이행 지속률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이후 양육비 이행률은 줄곧 증가해 왔다. 양육비 이행 확약 이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2015년 21.2%에서 2021년 38.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이 약속된 비율과 비교하자면 이행률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육비가 1회만 지급되고 이행이 중단된 경우도 이행건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표 7]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대비 실이행건수 비율

(단위 : 건,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누계 |
|----------------|-------|-------|-------|-------|-------|-------|-------|--------|
|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 2,427 | 2,831 | 2,783 | 3,494 | 4,538 | 2,428 | 2,602 | 21,103 |
| 실이행건수 | 514 | 1,044 | 1,018 | 1,146 | 1,993 | 965 | 1,400 | 8,080 |
| 이행률 | 21.2 | 29.6 | 32.0 | 32.3 | 35.6 | 36.1 | 38.3 | 38.3 |

주: 양육비 이행률은 양육비 실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연도별 누적된 확약건수 대비 누적된 이행건수로 계산

자료: 양육비 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누가 양육비를 받았는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이혼부가 확약받은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은 38.0%에서 2021년 59.5%로 증가하였다. 동일 기간 이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5.4%였고, 2021년도에는 53.9%로 상승하였다.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미혼부가 약속받은 양육비의 이행률은 32.3%였으나, 2021년도에는 90.0%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미혼모는 2015~2019년의 이행률 31.5%에서 2021년 33.6%로 증가함에 따라 가장 소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5~2021년 기간의 누적률을 보면, 미혼부(42.2%)와 이혼부(41.0%)의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이 높고, 미혼모가 가장 낮다. 다만 미혼부는 그 사례가 작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혼모의 경우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은 38.2%, 미혼모의 누적 양육비 이행률은 31.6%에 그치고 있는 점도 관찰된다.

[표 8] 양육비 이행의무확정건 대비 실이행건

(단위 : 건, %)

| 구분 | | 2015-2019 | 2020 | 2021 | 누계 |
|-----|---------|-----------|-------|-------|--------|
| 이혼부 | 접수건 | 2,859 | 471 | 386 | 3,716 |
| | 이행의무확정건 | 2,303 | 396 | 388 | 3,087 |
| | 실이행건 | 874 | 161 | 231 | 1,266 |
| | 비율 | 38.0 | 40.7 | 59.5 | 41.0 |
| 이혼모 | 접수건 | 16,178 | 2,367 | 2,064 | 20,609 |
| | 이행의무확정건 | 12,975 | 1,915 | 2,067 | 16,957 |
| | 실이행건 | 4,590 | 767 | 1,114 | 6,471 |
| | 비율 | 35.4 | 40.1 | 53.9 | 38.2 |
| 미혼부 | 접수건 | 86 | 14 | 14 | 114 |
| | 이행의무확정건 | 62 | 11 | 10 |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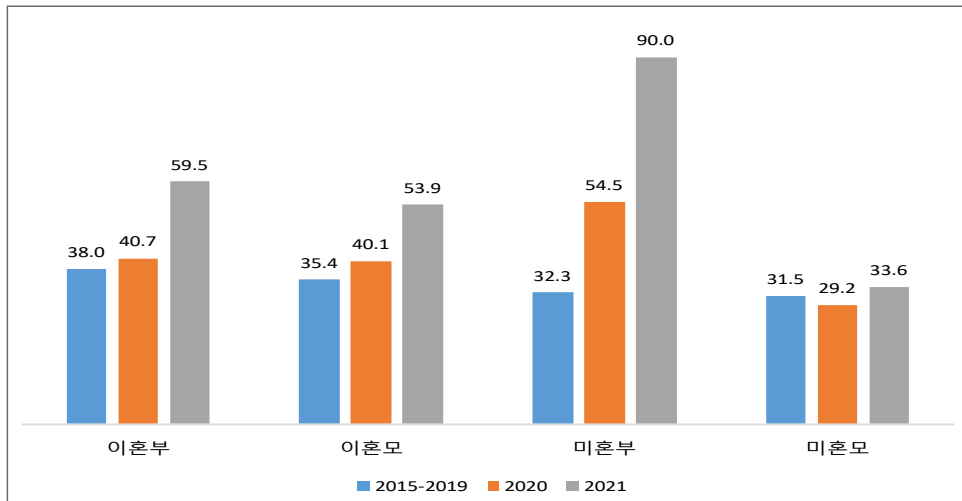
| | | | | | |
|-----|---------|-------|------|------|-------|
| | 실이행건 | 20 | 6 | 9 | 35 |
| | 비율 | 32.3 | 54.5 | 90.0 | 42.2 |
| 미혼모 | 접수건 | 1,034 | 175 | 143 | 1,352 |
| | 이행의무확정건 | 733 | 106 | 137 | 976 |
| | 실이행건 | 231 | 31 | 46 | 308 |
| | 비율 | 31.5 | 29.2 | 33.6 | 31.6 |

주: 양육비 이행 통계 전산화('19년 6월) 이전의 실이행 현황은 연도별 구분이 어려워 2015~2019의 양육비 이행률을 합산하여 살펴봄.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그림 1] 신청자별 양육비 이행확정건 대비 실제 이행건

(단위 :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무엇보다, 양육비는 이행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 지속률은 높지 않다. 2015~2021년 기간 동안 이행된 양

육비 총 이행건수 8,080건 중 최소 3회 이상 이행 건수는 4,084건에 불과하여 양육비 이행 지속률은 50.5%에 그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비해 양육비를 실제로 이행하는 이행률은 38.3%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겨우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성과가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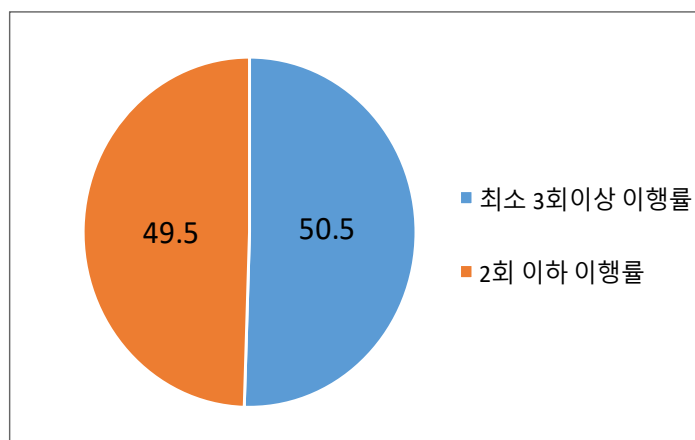
[표 9] 양육비 이행 지속률

(단위: 건, %)

| 구분 | 2015~2021 |
|---------------|-----------|
| 양육비 실제 이행건수 | 8,080 |
| 최소 3회 이상 지속건수 | 4,084 |
| 지속률 | 50.5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그림 2] 양육비 이행 지속률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6) 양육비 이행 금액

법률 제정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법률 지원을 하면서 양육비 이행금액 역시 증가하였다. 2015년 25억 2,600만 원이었던 양육비 이행금액은 2021년 272억 4,500만 원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0] 양육비 이행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금액 | 2,526 | 8,596 | 14,184 | 15,088 | 26,230 | 17,309 | 27,245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7)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

(가) 추심지원

「양육비이행법」 제19조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 신청건수는 2019년 1,971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추심명령 신청 대비 결정 건수 누적 비율은 99.6%에 이르고 있다. 다만, 추심명령을 통해 양육비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추적되고 있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표 11] 양육비 추심지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
| 추심명령 신청 | 1,095 | 1,189 | 1,411 | 1,374 | 1,971 | 1,446 | 1,136 | 9,622 |
| 추심명령 결정 | 751 | 1,113 | 1,746 | 1,357 | 2,048 | 1,445 | 1,120 | 9,580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나)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권 추심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¹⁶⁾이 있다.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양육비이행원을 경유한 신청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15년 318건이었던 신청건수는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도에는 7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 역시 확인이 어렵다.

[표 1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및 결정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직접지급명령 신청 | 318 | 187 | 265 | 195 | 254 | 159 | 73 |
| 직접지급명령 결정 | 207 | 234 | 264 | 214 | 285 | 162 | 77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16) 대한민국 법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최종 검색일: 2022.6.30.),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8/index.html.

(다) 감치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절차에는 감치제도가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 1항17)에 따른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감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구인된다.¹⁸⁾ 감치명령 신청건수는 2015년 21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도에는 632건에 달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381건이 신청되었다. 감치 결정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장기동반 활동을 통한 감치성공건수는 크게 증가하여 2016년 7건에서 2021년 42건을 기록하였다.

[표 13]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및 성공건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감치명령 신청* | 21 | 250 | 438 | 422 | 632 | 421 | 381 |
| 감치명령 인용 | 15 | 157 | 270 | 326 | 302 | 250 | 241 |
| 감치성공건수** | - | 7 | 10 | 13 | 2 | 25 | 42 |

주: * 종결사건 기준.

**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기동반 활동을 통한 감치성공건수.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17)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최종 검색일: 2022.6.30.),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search_put=>>

(라)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양육비이행법」 제20조19)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건수가 많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채권자에게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에 압류 요청건수 21건, 2016년 29건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6년, 2017년 각 1건이다.

[표 14]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시행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압류 요청건 | 21 | 29 | 12 | 12 | 1 | - | 1 |
| 이행건 | - | 1 | 1 | - | - | - | 1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양육비이행법」 제16조20)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 확

- 19)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 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인 및 조사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소득 또는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산조사 요청건은 2015년 1,124건에서 2018년 2,67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1년에는 1,158건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재산조사 요청건은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인 동의 비율이 중요한데,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1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채무자의 재산조사 본인 동의 비율은 5.9%에 불과하여 채무자 재산 조사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권한 강화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표 15]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재산조사 요청건 | 1,124 | 1,511 | 1,856 | 2,677 | 2,044 | 1,991 | 1,158 |
| 본인동의 | - | 98 | 138 | 90 | 89 | 92 | 68 |
| 본인동의 비율 | - | 6.5 | 7.4 | 3.4 | 4.4 | 4.6 | 5.9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가) 예산

한시적 양육비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행관리원의 장이 9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산 현황을 보면, 2015년 2억 4천만 원이 배정되었고, 불용액 발생으로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 2,2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2021년 3억 원으로 다시 증액되었다. 2022년도에는 총 16억 1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2022년 6월 기준 5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다.

[표 16] 한시적 긴급 양육비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예산 | 지출 | 불용 |
|----------|-------|-----|-----|
| 2015 | 240 | 62 | 178 |
| 2016 | 268 | 116 | 152 |
| 2017 | 100 | 92 | 8 |
| 2018 | 122 | 122 | - |
| 2019 | 300 | 262 | 38 |
| 2020 | 300 | 282 | 18 |
| 2021 | 300 | 261 | 39 |
| 2022. 6. | 1,601 | 572 | -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나) 신청 및 지원 현황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²¹⁾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당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어서 한시적 양육비를 신청하는 건수는 많지 않다. 2015년 291건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88건, 2017년도에는 93건으로 감소한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8년 131건, 2019년 212건, 2020년 249건이었다가, 2021년 56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총 지원자 수는 6년의 기간 동안 816명에 이른다.

21)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최종 검색일: 2022.4.29.),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를 참고할 수 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예: 자녀의 질병, 실직/폐업, 공과금 연체 등)
 -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⑤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⑥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⑦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17.5%였던 지원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70.0%의 지원율을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21년에는 신청자의 52.0%가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지원받았다.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가장 많이 신청하고, 가장 많이 지원받는 대상은 이혼모이며, 다음 이혼부, 미혼모 순이다. 2021년에는 2명의 미혼부가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신청하였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표 1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
| | 신 청 | 지 원 | 신 청 | 지 원 | 신 청 | 지 원 | 신 청 | 지 원 | 신 청 | 지 원 | 신 청 | 지 원 | 신 청 | 지 원 |
| 이혼부 | 29 | 3 | 9 | 7 | 12 | 6 | 14 | 8 | 20 | 16 | 28 | 13 | 56 | 23 |
| 이혼모 | 247 | 46 | 76 | 40 | 81 | 51 | 114 | 58 | 190 | 130 | 212 | 130 | 498 | 267 |
| 미혼부 | 3 | 1 | - | - | - | - | 1 | 1 | - | - | - | - | 2 | - |
| 미혼모 | 12 | 1 | 3 | 2 | - | - | 2 | - | 2 | 2 | 9 | 5 | 13 | 6 |
| 합계 | 291 | 51 | 88 | 49 | 93 | 57 | 131 | 67 | 212 | 148 | 249 | 148 | 569 | 296 |
| 지원율 | 17.5 | | 55.7 | | 61.3 | | 51.1 | | 70.0 | | 59.4 | | 52.0 |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다) 한시적 양육비 구상 현황

「양육비이행법」 제14조제5항22)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였을 경우

22)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6조제2항23)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사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회수율은 높지 않다. 다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한시적 긴급양육비에 대한 구상 소송을 시범 운영한 해가 2019년도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에는 청구건수 42건 중 단 한 건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8년도에는 30건 중 1건을 회수하였다. 이후 2019년도 회수율도 2.0%에 머물다가 2020년 47건 중 9건을 회수하여 19.1%의 회수율을 기록하였고, 2021년도에는 114건의 청구건수 중 19건의 회수에 성공하여 16.7%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표 1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별 구상 현황

(단위 : 건, %)

| 구 분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
| | 청구 | 회수 | 청구 | 회수 | 청구 | 회수 | 청구 | 회수 | 청구 | 회수 |
| 이혼부 | 1 | - | 4 | - | 5 | - | 4 | 2 | 12 | 2 |
| 이혼모 | 40 | - | 25 | 1 | 44 | 1 | 42 | 7 | 101 | 16 |
| 미혼부 | - | - | - | - | - | - | 1 | - | - | - |
| 미혼모 | 1 | - | 1 | - | - | - | - | - | 1 | 1 |
| 합계 | 42 | 0 | 30 | 1 | 49 | 1 | 47 | 9 | 114 | 19 |
| 회수율 | 0 | | 3.3 | | 2.0 | | 19.1 | | 16.7 |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23)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원건수 대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청구율은 2017년 73.7%였다가 이듬해인 2018년도 44.8%로 크게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5~2021년도 지원건수 총합은 816건, 그 중 청구건수는 282건으로 34.6%의 청구율을 보이고 있다.

총 지원건수 대비 회수율을 살펴보면, 회수율은 더욱 저조하다. 2018년도에는 지원건수 67건 중 1건이 회수되어 1.5%의 회수율을 기록하였고, 2019년도에는 148건의 지원건수 중 단 1건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0.7%로 감소하였다. 이후 2020년도에는 회수건수 9건으로 총 지원건수 148건의 6.1%만이 회수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19건이 회수되어 총 지원건수 296건의 6.4%가 회수되었다. 2015~2021년의 기간 동안 총 지원건수 816건 중 회수건수는 30건으로 회수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표 19]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청구 및 회수 현황

(단위 : 건,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누계 |
|-------------|------|------|------|------|------|------|------|------|
| 지원건수 | 51 | 49 | 57 | 67 | 148 | 148 | 296 | 816 |
| 청구건수 | 0 | 0 | 42 | 30 | 49 | 47 | 114 | 282 |
| 청구율 | 0 | 0 | 73.7 | 44.8 | 33.1 | 31.8 | 38.5 | 34.6 |
| 회수건수 | 0 | 0 | 0 | 1 | 1 | 9 | 19 | 30 |
| 청구건수 대비 회수율 | 0 | 0 | 0 | 3.3 | 2.0 | 19.1 | 16.7 | 10.6 |
| 지원건수 대비 회수율 | 0 | 0 | 0 | 1.5 | 0.7 | 6.1 | 6.4 | 3.7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한편, 양육비를 회수할 시 지원금액의 일부분만 회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금액 대비 회수금액을 회수율로 집계하기도 한다. 2017년 청구금액

9,500만 원 중 회수금액은 없었으며, 2018년 7,400만 원의 청구금액 중 2백만 원을 회수하여 회수율 2.70%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0년 1억 8,900만 원의 청구금액 중 1,700만 원을 회수하여 13.93%로 회수율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억 3,900만 원 중 3,900만 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16.32%로 증가하였다. 2022년 6월까지의 누계 청구금액은 8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8,400만 원이 회수되어 누계 회수율은 9.58%이다.

[표 20] 한시적 양육비 청구금액 대비 회수금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6 | 누계 |
|------|------|------|------|-------|-------|--------|------|
| 청구금액 | 95 | 74 | 105 | 122 | 239 | 242 | 877 |
| 회수금액 | - | 2 | 1 | 17 | 39 | 26 | 84 |
| 회수율 | 0 | 2.70 | 0.95 | 13.93 | 16.32 | 10.33 | 9.58 |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1)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²⁴⁾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

24)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이 철회된다.

운전면허 제재 조치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1년 6~12월의 기간 동안 32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심의결정에 이른 경우는 16건, 처분결정이 내려진 건은 4건이다. 2022년 1~6월의 기간 동안에는 116건이 신청되어, 심의결정에 이른 건수는 98건, 경찰서로부터 처분결정이 통보된 건수는 76건이다. 누계건수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6월까지 접수 건수 148건 중 운전면허정지 처분 결정은 총 80건으로 접수 대비 처분 결정 비율은 54.1%에 이르고 있다.

[표 21]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처분 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21 | 2022.6. | 누계 |
|----------------|------|---------|------|
| 접수 | 32 | 116 | 148 |
| 심의결정 | 16 | 98 | 114 |
| 처분결정 | 4 | 76 | 80 |
| 접수 대비 처분 결정 비율 | 12.5 | 65.5 | 54.1 |

주: 심의결정: 여성가족부의 심의결정 건

처분결정: 처분기관(경찰서)의 처분결정 건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출국금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²⁵⁾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양육비 지급 불이행 출국금지 접수건수는 38건, 2022년 1~6월의 접수건수는 62건이고, 총 처분결정은 49건으로 접수 대비 출국금지 처분 결정 비율은 49.0%에 이르고 있다.

[표 22]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2021 | 2022.6 | 누계 |
|-------------|------|--------|------|
| 접수 | 38 | 62 | 100 |
| 심의결정 | 9 | 42 | 51 |
| 처분결정 | 9 | 40 | 49 |
| 접수 대비 결정 비율 | 23.7 | 64.5 | 49.0 |

주: 심의결정: 여성가족부의 심의결정 건

처분결정: 처분기관(법무부)의 처분결정 건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 25)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명단공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²⁶⁾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자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13일 시행 이후 접수건수는 11건, 2022년 1~6월의 기간에는 18건이 접수되었다. 누계건수 29건 중 명단공개 건수는 13건으로 접수 대비 공개 결정 비율은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처분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2021 | 2022.6 | 누계 |
|-------------|------|--------|------|
| 접수 | 11 | 18 | 29 |
| 심의결정 | 2 | 11 | 13 |
| 명단공개 | 2 | 11 | 13 |
| 접수 대비 결정 비율 | 18.2 | 61.1 | 44.8 |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26)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관련 의견 조사

(1)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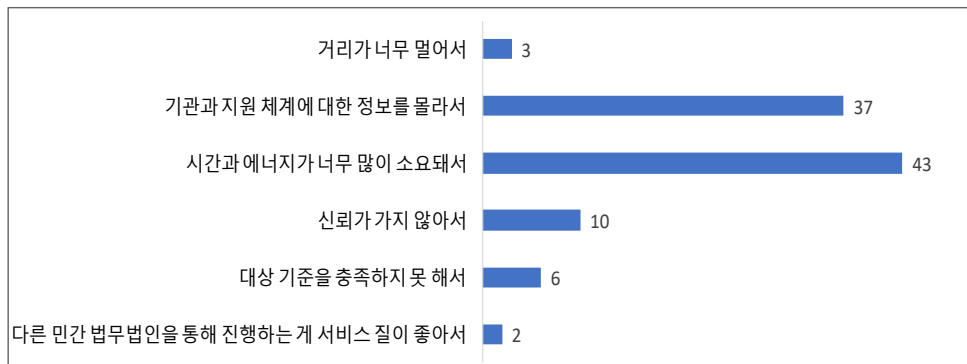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2021년 11월 16일~2021년 12월 7일 동안 한부모가족 211명을 대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 한부모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자가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33%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라는 답변이 43%로 가장 많았다. ‘기관과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는 답변은 3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외 ‘신뢰가 가지 않아서’(10%), ‘대상(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의 답변은 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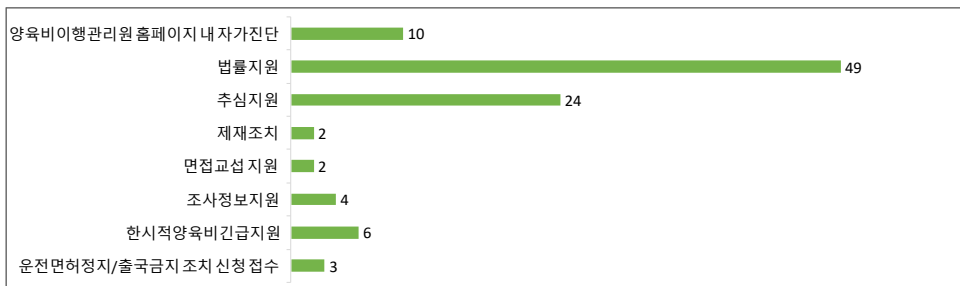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2) 이용 서비스 유형 및 만족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용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추심지원’ 24%,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자가진단’ 10%,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6%라 답변하였다.

[그림 4]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받은 서비스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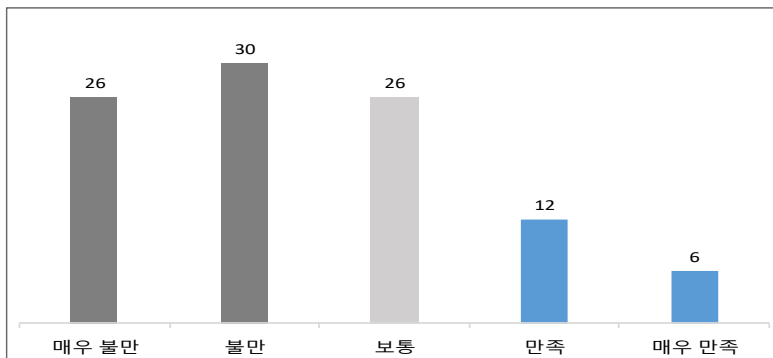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대상자만을 상대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의견이 56%, 만족했다는 평가는 18%에 그쳤다.

[그림 5]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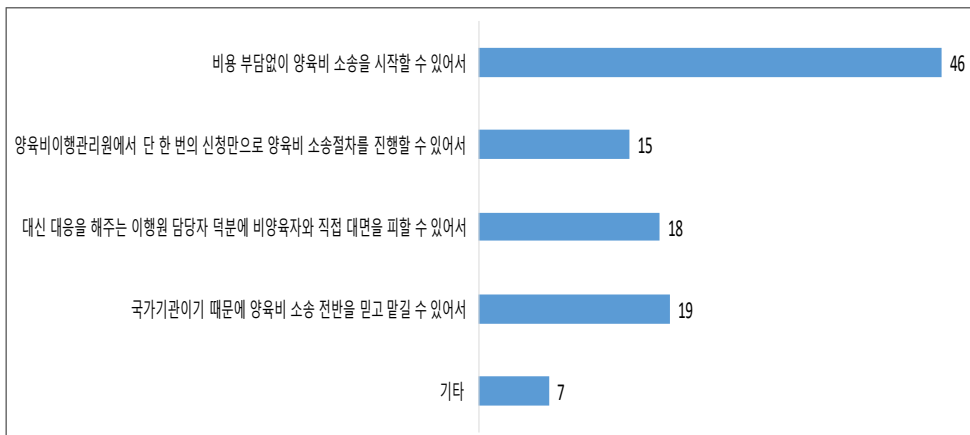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서비스 만족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양육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46%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 전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19%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비양육자와 직접 대면을 피할 수 있어서’가 18%,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단 한번의 신청으로 양육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은 15%에 이르고 있다.

[그림 6]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 %)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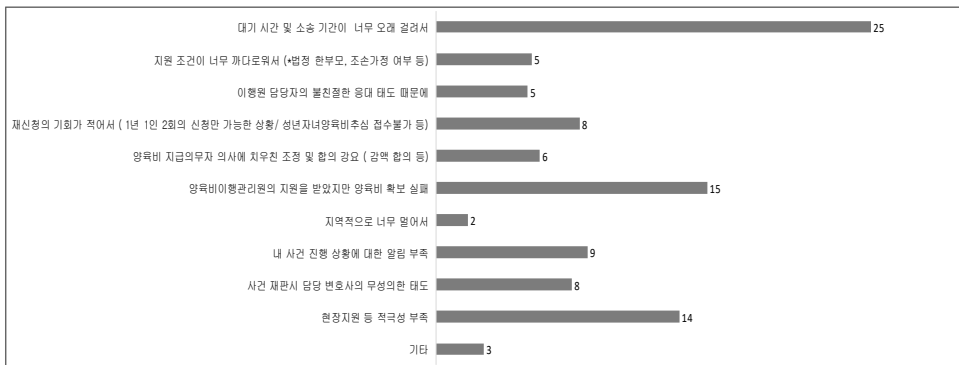
한편, 서비스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 및 소송 기간이 너무 오래걸려서’라는 답변이 25%로 가장 많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양육비 확보 실패’라는 답변은 15%에 이르렀다. 그 외 ‘현장지원 등 적극성 부족’(14%), ‘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 부족’(9%)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세부 의견으로는 “12월에 신청하고 4월에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어 소

장접수 후 10월에 변론기일이 잡혔다. 1년이나 걸려서 기다리는게 힘들었다. 아이들의 양육비인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전화라도 받아 주었으면. 전화연결하기도 힘들다”, “소송접수 기간이 너무 길고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신속한 처리기간이 필요하다. 긴 소송 기간으로 아이들 제대로 못 먹고 못 입힌다. 양육자는 일하고 육아하느라 실 수가 없다”, “소송 기간이 너무 길고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한데, 담당관리자는 전화연결도 힘들고, 중간중간 진행상황이나 추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니터링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7]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단위 : %)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3)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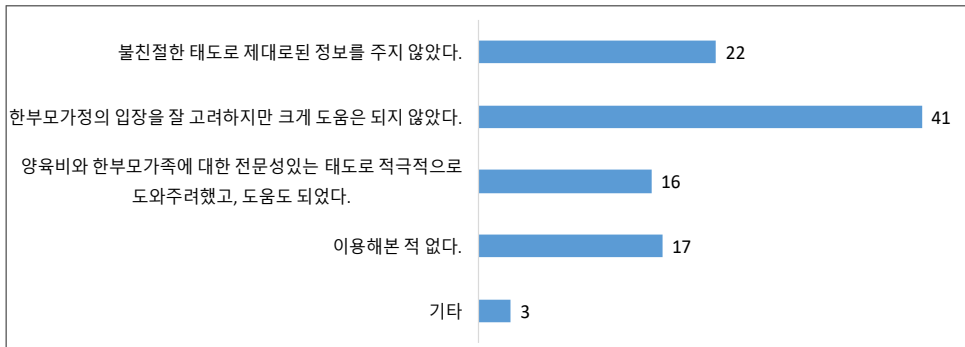
법률지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족의 입장을 잘 고려해주었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41%, ‘불친절한 태도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2%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양육비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성으로 적

극적으로 도와주려 했고, 도움도 되었다’는 답변은 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의견으로는 “불친절하고 변호사가 아무 이유와 연락 없이 자주 바뀌며 소송진행상태 여부를 알 수 없고, 문의가 필요할 시 연락이 닿지 않음”, “양육자가 원하는 때에 법률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전화를 원함”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8]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도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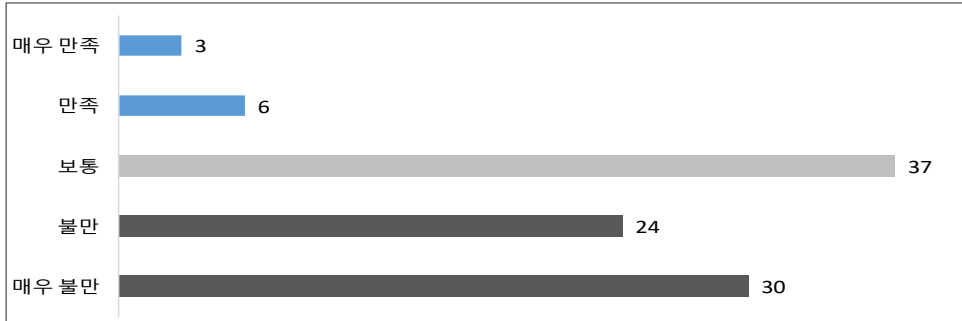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4) 추심절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관 협조 및 재산 조회 신청 등 추심절차 지원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답변은 9%에 그치고 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의 답변은 54%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37%는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9] 추심절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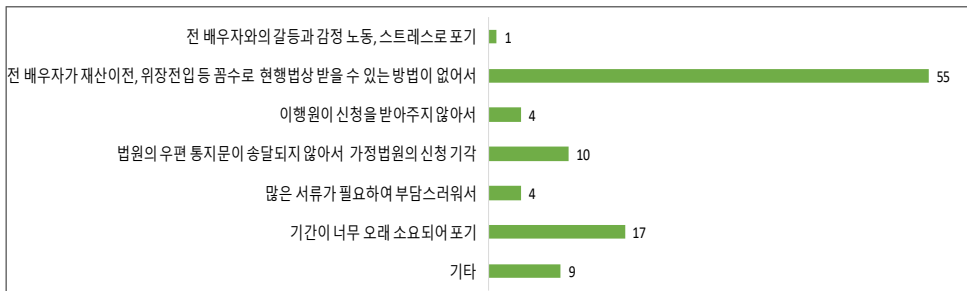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5) 추심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

양육비 추심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전배우자가 재산이전, 위장전입 등의 꼼수로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포기’했다는 답변은 17%였고, ‘법원의 우편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답변은 10%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답변’도 4%에 이르고 있었다.

[그림 10] 추심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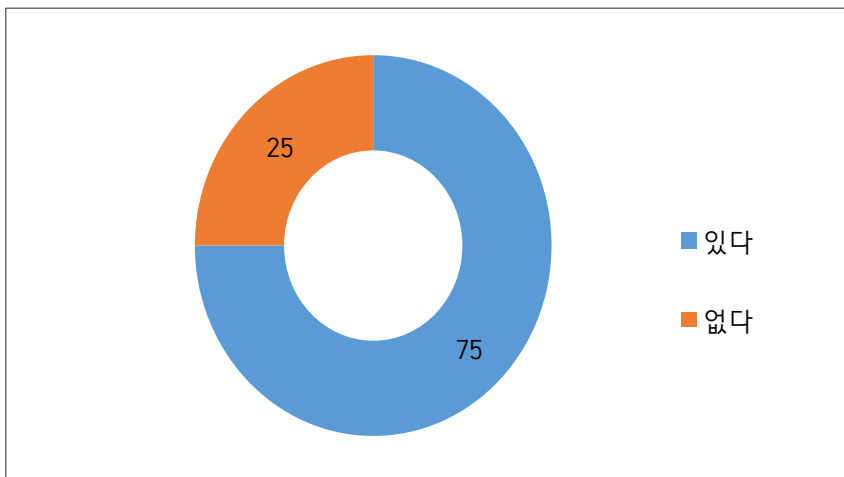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6) 양육비이행관리원 유료 이용에 관한 의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는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등의 접수가 제한되거나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행관리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실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11] 이행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비용을 지불할 의사

(단위 : %)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IV. 결론

1.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와 한계

가. 성과

2014년 제정(2015년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실적을 검토하였다. 양육비 소송지원 실적, 양육비 이행률과 지속률, 양육비 이행확보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현황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이행법」 제정을 통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근거의 마련은 자녀양육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이 설치되기 이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위탁기관을 통한 지원 건수가 연 1,400여 건을 웃돌았다면, 법제정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위탁기관에서 진행된 소송지원 건수는 지난 6년의 기간(2015~2021년)동안 연 평균 6,831건으로 증가하여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과 양육비 이행 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2015년 약 25억 원에서 2021년 272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2022년 5월 말 기준 40,499

명의 아동에게 총 1,218억 6,600만 원의 양육비가 이행되었다.²⁷⁾

셋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5~2021년의 기간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곤란에 처한 한부모 중 정부로부터 긴급양육비를 지원받은 한부모는 816명에 이르고 있다. 신청자 모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제재 조치 대상자로 접수된 양육비 채무자의 절반 가량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을 받았다. 처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전무했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 제재 조치가 도입되었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당사자인 양육비 채권자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에 대한 의견 조화를 통해 법률 제·개정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시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목되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위탁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자녀양육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응답률이 높으면서도, 한부모들은 실비용을 지급하여서라도 이행관리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이용

27)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자들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을 예산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법률 근거의 미흡 등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의견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담기관의 필요성과 향후 품질 개선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운영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에게 실질적인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육비이행법」의 제정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의 소송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겠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한부모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비용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단 한번의 신청으로 양육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양육비 소송전반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법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들이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나. 한계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창출한 중요한 성과들은 여러 한계들과 맞물려 있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접수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만일, 신청접수를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의 인력 부족 등 자원의 문제라면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 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6월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투입될 수 있는 직접소송 변호사 수는 6명에 불과하다. 이

러한 한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의 의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부모들은 이행관리원 변호사의 도움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 ‘한부모가정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이행확보 지원의 핵심 인력인 변호사로부터의 조력에 큰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인력확보 뿐 아니라 지원절차를 명료화·간소화할 수 있는 지원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원 및 직접소송 변호사 수

(단위 : 명)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6. |
|------------------|------|------|------|------|------|------|------|---------|
|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원 수 | 46 | 43 | 78 | 80 | 74 | 75 | 61 | 59 |
| 변호사자격 직원 수 | 19 | 22 | 23 | 21 | 20 | 19 | 17 | 12 |
| 직접소송 변호사 직원 수 | 10 | 12 | 15 | 16 | 16 | 14 | 11 | 6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이 높지 않다. 2021년 기준 전체 소송 중 18.7%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 역시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으로 양육비 확보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축적된 반면, 여러 소송을 다루는 위탁기관에서는 소송 진행 효율이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²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28)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2022.6.15.)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와 같이 2019년 이후 이용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나마 직접소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아주지만, 기타 위탁기관에서는 접수조차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표 25]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직접소송 | 71.8점 | - | 77.5점 | 80.6점 | 79.8점 | 67.2점 |
| 위탁소송 | - | 57.9점 | - | 71.7점 | 63.9점 | 57.6점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에 본인 동의 이후에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6년간 본인 동의 비율은 평균 5.4%에 그치고 있어, 이행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강제조치 권한이 부족할수록 양육비 이행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양육비 이행을 확약받는 비율은 81.8%이지만 실제 이행률은 38.3%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3개월 이상 이행이 지속되는 비율도 절반 가량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넷째,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감치판결에 이르는 데 있어 송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야 제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이라는 방법으로 법원의 우편송달을 거부하면 감치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시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²⁹⁾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공시송달제도 도입이 양육비 채무자 제재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법률 개정으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감치명령 이후에도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상쇄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에 대한 양육비 회수율이 낮다. 청구건수 대비 누계 회수율은 10.6%에 그치고 있고, 청구금액 대비 누계 회수율은 이보다 낮은 9.58%이다. 한시적 긴급양육비 제도 시행은 엄밀히 말하여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일부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전면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과제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쇄도하는 지원 요청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법률구조공단 등 위탁기관으로의 과도한 업무 이관은 전문성, 효율성, 이용자 불만 등의 문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개원

29)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8), 2021.6.8.;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6), 2021.6.9.

시보다 변호사 수, 직접소송 수행 변호사 수가 감소하는 등 인력 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6명에 불과한 소송 변호사 충원을 비롯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전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효율성 증대와 관련한 예산 확보 및 기관의 업무 자율성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국적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담기관이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를 전수처리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최소 17개 시·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분원을 설치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행관리원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변호사 부족으로 한부모는 법원 기일에서야 처음 짧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의 경험이다.³⁰⁾ 또한, 과거에 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내되고 있지 않은 정보들도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감치 판결 이후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행확보 지원과 관련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권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인력 충원, 지역 분원 설치 과제 외에도 이행관리원 자체의 업무수행 권한이 확대되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은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권으로 징수

30)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2022.6.15.)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³¹⁾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이행관리원이 의견 조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양육비이행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를 제재하기 위한 요건인 감치명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감치명령은 인신구속을 명하는 것이어서 수위가 높은 제재 수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및 잠적 등의 방법으로 우편송달을 회피하여 감치 신청 기각 혹은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 소송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³²⁾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자를 제재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감치명령을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제재 방안 마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7조(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제재 요건으로서의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궁극적 목적이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라는 점에서 감치명령 요건 삭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 자체가 제재 조치 시행의 요건이지,

31)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How is Child Support Enforced?」 (최종 검색일: 2022.7.14.),

<<https://www.cleo.on.ca/en/publications/childsupport/how-child-support-enforced>>

32) 이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2022.6.15.

감치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양육비이행관련 전담부서인 가족책임사무국(The Family Responsibility Office)은 양육비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고 있으면서,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국가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³⁾ 미국 뉴욕주의 경우 양육비가 4개월 이상 연체될 시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경고장을 받게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45일 이내에 연체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거나, 중재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소명절차를 밟아야 한다.³⁴⁾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구상권 강화이다. 법률의 중요한 입법 목적인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회수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가는 시혜 차원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기보다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강력한 구상권을 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책임 회피로 인해 초래된 부담을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형국이 될 수 있고, 양육에 대한 부모 책임 의식이 희석될 수도 있다.

결국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권한 및 위상 강화,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확대 및 회수율 제고에 대한 연동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Government of Ontario, 「Missing Child and Spousal Support Payors」 (최종 검색일: 2022.7.14.), <<https://www.ontario.ca/page/missing-child-and-spousal-support-payors>>

34) New York State, 「Support Enforcement Actions」 (최종 검색일: 2022.7.14.), <https://childsupport.ny.gov/dcse/enf_actions.html>

참 고 문 헌

- 김승권, 「양육비 제도의 중요성과 쟁점」, 『양육비선지급관련 법안 공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
- 대한민국 법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최종 검색일: 2022.6.30.),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8/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최종 검색일: 2022.6.30.),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8/index.html>.
- 박복순 외,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 박복순, 「양육비 선지급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의견」, 『양육비선지급관련 법안 공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
- 박복순,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민사법연구』, 12(2), 2004.
-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최종 검색일: 2022.4.29.),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4.).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4.2.
- 제311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2012.9.19.)
- 제311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2012.11.9.)
- 제315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2013.4.15.)
- 제322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2014.2.21.)

제32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2014.2.27.)

제322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2014.2.28.)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How is Child Support Enforced?」(최종 검색일: 2022.7.14.), <<https://www.cleo.on.ca/en/publications/childsupport/how-child-support-enforced>>

Government of Ontario, 「Missing Child and Spousal Support Payors」(최종 검색일: 2022.7.14.), <<https://www.ontario.ca/page/missing-child-and-spousal-support-payors>>

New York State, 「Support Enforcement Actions」(최종 검색일: 2022.7.14.), <https://childsupport.ny.gov/dcse/enf_actions.html>

OECD, 「OECD Family Database Co2.2: Child Poverty」(최종 검색일: 2022.6.25.), <https://www.oecd.org/els/CO_2_2_Child_Poverty.pdf>

부 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여성가족부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 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예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육비 상담, 협의, 양육비채권 확보 법률지원, 추심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주소, 근무지 조회,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조회, 제재조치 도입 등으로 양육비 지급에 큰 효과를 보고 있음
※ 양육비 이행률 : '15.12 기준 21.2% → '22.3 기준 38.4%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없음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과 법원을 통한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 조회를 양육비채무자 동

의없이 행정정보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등 법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이행 의무가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2. 양육비이행관리원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효과있음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적 책무 확인 및 사회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이·미혼 부모 사인간의 채권으로 여겨지던 양육비 채권이 미성년 자녀의 생활비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매월 발생하는 정기금 채권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양육비이행관리원) 및 관련 업무 지원 필요성을 명시함

- 그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5. 3. 25. 개원 이후 총 52,065건의 무료 소송지원, 40,909명의 자녀에 대해 121,866백만 원의 양육비를 이행하는 성과를 보임('22. 5. 말 기준)

○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이행지원제도 강화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행정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는 괄목할만한 법률 개정을 이뤄왔음

- 그 결과 매년 꾸준한 양육비 이행률* 상승을 보임

* '17년 32.02% → '18년 32.3% → '19년 35.6% → '20년 36.1%
→ '21년 38.3%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를 통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

- 지원건수 1,013건, 지원자녀수 1,715명, 실지원금액 1,696백만 원 ('22. 5. 말 기준)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일 경우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될 우려가 있어 신청을 주저하는 부작용 발생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육비이행법 제13조의2 신설(송달 특례)
 -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발송된 경우 송달 간주
- 양육비이행법 제16조 개정(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 조회)
 -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동의가 없이도 재산·소득 조회 가능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 개정(제재조치 관련 감치 명령 삭제)
 - 양육비 이행명령 후 행정 제재조치 작동
-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개정(형사처벌 관련 감치 명령 1년 후 삭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 필요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또는 양육비 대지급 도입
 -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확대 필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절차로 집행권원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예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효과 측면: 양육비 이행법이 제·개정되기 전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규제나 강제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비 양육 부모가 자녀양육비 이행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생각지 않았고,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가책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급의무자(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해태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양육비 미지급률 80%에 치달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한부모/미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도입되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조치를 통해 지급 이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양육비 미지급 재발을 방지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을 활용을 하는 가정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상호 작용으로 효력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 효과가 미약한 이유) 첫째, 현행 양육비 개정법 신청의 전제조건인 ‘감치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정법 신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양육비 미지급 가정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강제성 낮은 시행규칙’문제로 여전히 양육비를 회피하기가 쉬우며 실제 양육비 확보의 성과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양육비 확보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한가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송절차 및 행정절차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적시가 중요한 아동 양육비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단호하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① 이행명령 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소송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합니다.

② 제재조치의 각 예외조항과 강제성 낮은 조치기준을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③ 제재조치의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비효율적인 과정을 없애 ‘진행 대기’ 기간 소요를 줄여야 합니다.

④ 공시송달특례법 도입으로 감치 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양육비 이행법을 강화하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를 시행하여,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력하게 추구하고 징수하는 것이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향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배드파더스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 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효과는 있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려면 양육자가 미지급자를 상대로 감치판결을 받아야만 하는데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한 경우 소송진행이 안되므로 감치판결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효과가 미약할 뿐 부작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합니다. 이행명령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판결없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자들 중 72%가 위장전입 혹은 고의적 송달거부로 소송을 회피하므로 현재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시송달특례법(전주혜 의원발의)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양육비 이행법의 부실한 것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윤석열대통령이 공약한 '양육비 선지급제' 공약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NARS 입법영향분석 발간 일람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55호 | 「주거급여법」의 입법영향분석 | 2022. 8. 19. | 장경석 김강산 |
| 제54호 | 청렴계약제의 입법영향분석 | 2022. 8. 9. | 박인환 |
| 제53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21.12.28. | 구세주 |
| 제52호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 2021.12.9. | 정준화 |
| 제51호 | 청소년 인터넷게임 섯다운제의 입법영향분석 | 2021.8.20. | 허민숙 |
| 제50호 | 「섯행교육규제법」상 섯행교육 및 섯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 2020.12.31. | 이덕난 |
| 제49호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 2020.12.31. | 전윤정 |
| 제48호 | 결핵검진등 대상 확대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 2020.12.31. | 김은진 |
| 제47호 | 총기안전관리 규제강화의 입법영향분석 | 2020.12.4. | 김현정 |
| 제46호 |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 2020. 9. 7. | 김여라 |
| 제45호 |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9.12.31. | 이정미 |
| 제44호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 2019.12.26. | 이정진 |
| 제43호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 2019.12.24. | 정준화 |
| 제42호 |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9.12.23. | 이만우 |
| 제41호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9.12.20. | 전윤정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40호 |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9.12.13. | 기준 하 |
| 제39호 |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9.12.5. | 유재국 |
| 제38호 | 학업중단 숙려제의 입법영향분석 | 2019.12.3. | 허민숙 |
| 제37호 | 「공익신탁법」의 입법영향분석 | 2018.12.31. | 황현영 |
| 제36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 2018.12.26. | 장경석 강재구 |
| 제35호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8.12.24. | 김영석 |
| 제34호 |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영향분석 | 2018.12.24. | 김민창 김재환 정도영 |
| 제33호 | 단말기 부정이용·명의도용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6]의 입법영향분석 | 2018.12.20. | 장은덕 |
| 제32호 | 「방위사업법」 상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제18조제7항)의 입법영향분석 | 2018.12.19. | 김도희 |
| 제31호 |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8.12. 5. | 송민경 |
| 제30호 | 60세 이상 청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 2018. 11. 9. | 김 준 |
| 제29호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8.10.18. | 박인환 |
| 제28호 |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 | 2017.12.29. | 김주경 |
| 제27호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 입법영향분석 | 2017.12.29. | 유제범 |
| 제26호 |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 2017.12.29. | 최준영 |
| 제25호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 2017.12.29. | 이덕난 |
| 제24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등)의 입법영향분석 | 2017.12.28. | 조대형 |
| 제23호 |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 2017.12.11. | 김 준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22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 2017. 12. 4. | 장은덕 |
| 제21호 | 납세자보호관 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의 입법영향분석 | 2017.10.10. | 김영찬 박인환 |
| 제20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의 입법영향분석 | 2016.12.30. | 김휘정 |
| 제19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 2016.12.30. | 김 준 |
| 제18호 | 「병역법」 중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6.12.29. | 김예경 |
| 제17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의 입법영향분석 | 2016.12.29. | 한인상 |
| 제16호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항의 입법영향분석 | 2016.12.29. | 김영찬 |
| 제15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상승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 2016.12.09. | 권용훈 |
| 제14호 |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 2016.12.08. | 최진응 |
| 제13호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 2016. 11. 23 | 황현영 |
| 제12호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 2016. 11. 01. | 권성훈 |
| 제11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입법영향분석 | 2016. 10. 31. | 박지영 |
| 제10호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 2016. 10. 10. | 원시연 |
| 제9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6. 09. 09. | 심우민 |
| 제8호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입법영향분석 | 2016. 06. 30. | 최지현 |
| 제7호 |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6. 06. 24. | 김진수 |
| 제6호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31. | 황현영 |
| 제5호 |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30. | 유제범 |
| 제4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3조(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29. | 유웅조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3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원시연 장경석 |
| 제2호 | 「근로기준법」 제33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한인상 |
| 제1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김 준 |

NARS 입법영향분석 제56호

발 간 일 2022년 9월 8일
발 행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6788 · 4720
인 쇄 사단법인 에스디워크 서울지사 (TEL 02 · 2279 · 9938~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465-9355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1885-14

© 국회입법조사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 6788. 4510(代) www.nars.go.kr



| | |
|--------|----------------------|
| 발간등록번호 | 31-9735042-001885-14 |
| ISSN | 2465-9355 |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